

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 경위

- 발의일자: 2023. 11. 9.
- 발 의 자: 백일권 의원 외 3명
- 회부일자: 2023. 11. 10.(의안번호 제511호)
- 검토기간: 2023. 11. 13. ~ 11. 30.

2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 사업의 범위 등(안 제4조)
-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안심귀가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실태조사, 협력체계 구축,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25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9조

나. 입법예고: 2023. 11. 16. ~ 11. 21.(접수된 의견 없음)

다. 예산조치: 집행기관 협의(2024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)

4.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, 조례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반영되었고 각 조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됨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후, 구의 안전관리계획¹⁾을 작성할 때 이에 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.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 사업의 범위와 추진 절차를 제시하였고, 그 가운데 현재 추진²⁾하고 있거나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. 그 밖에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, 협력체계 구축,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도시 지역 중심으로 귀갓길 등의 범죄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최근 상황이나 안전등급이 낮은 편(붙임 자료 참조)에 속하는 우리구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, 안 제4조의 사업 중 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사례 발굴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후 조례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1) 구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하고 해당 구의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이 안전관리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 외에도 생활안전, 교통안전, 산업안전, 시설안전, 범죄안전, 식품안전,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.

2)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안심귀갓길(16개소) 유지·관리 사업과 스마트 안심택배함(14개소) 운영·관리 사업이며, 이 사업에 책정된 2023년도 예산(추경 포함)은 101,800천원임.

[붙임]

□ 지역안전등급 현황 (KOIS 국가통계포털 e-지방지표 자료 재구성)



구·군	교통사고	화재	범죄	생활안전	자살	감염병	종합
대구시	4	2	4	3	3	4	4등급
중구	4	4	5	5	2	4	5등급
동구	3	3	3	4	4	3	3등급
서구	4	3	4	4	4	4	4등급
남구	2	4	4	3	5	3	4등급
북구	2	2	3	3	3	3	3등급
수성구	2	2	2	1	2	3	2등급
달서구	2	1	3	3	4	2	3등급
달성군	1	1	5	1	1	1	5등급

※ 지역안전 상대등급: 1등급(10%), 2등급(25%), 3등급(30%), 4등급(25%), 5등급(10%) ★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안전함.

<21년 지역안전등급 전국 현황>

<21년 지역안전등급 대구시 구·군별 현황>